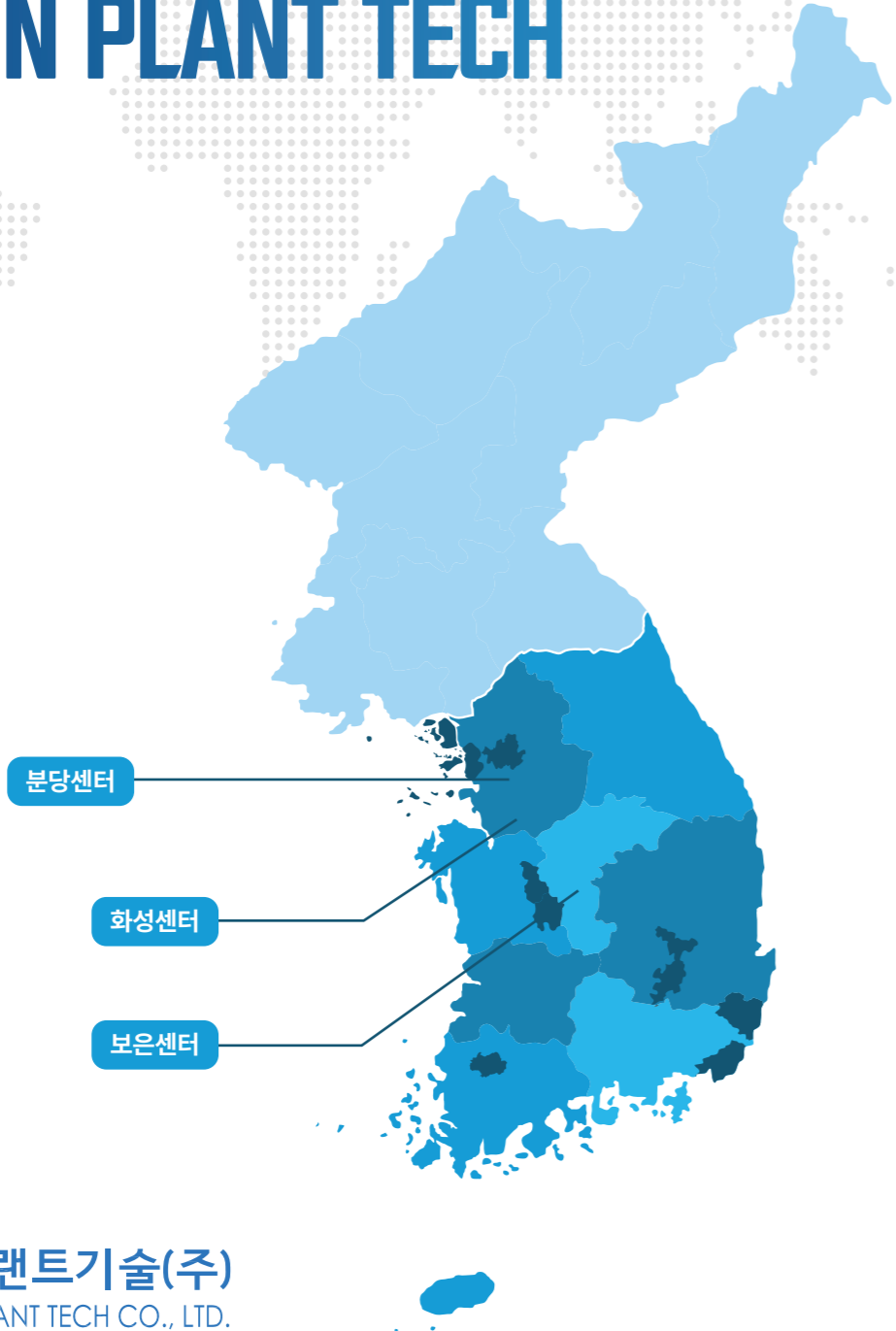


PARTNER WITH SEOEUN PLANT TECH



분당센터

화성센터

보은센터

 서은플랜트기술(주)
SEOEUN PLANT TECH CO., LTD.

분당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C-1412

보은센터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50-235

화성센터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47-15

문의전화 010-7760-6176 / 010-5796-2389 대표전화 031-703-0480
팩스 031-703-0481 이메일 septechn@septechn.co.kr 홈페이지 www.sepla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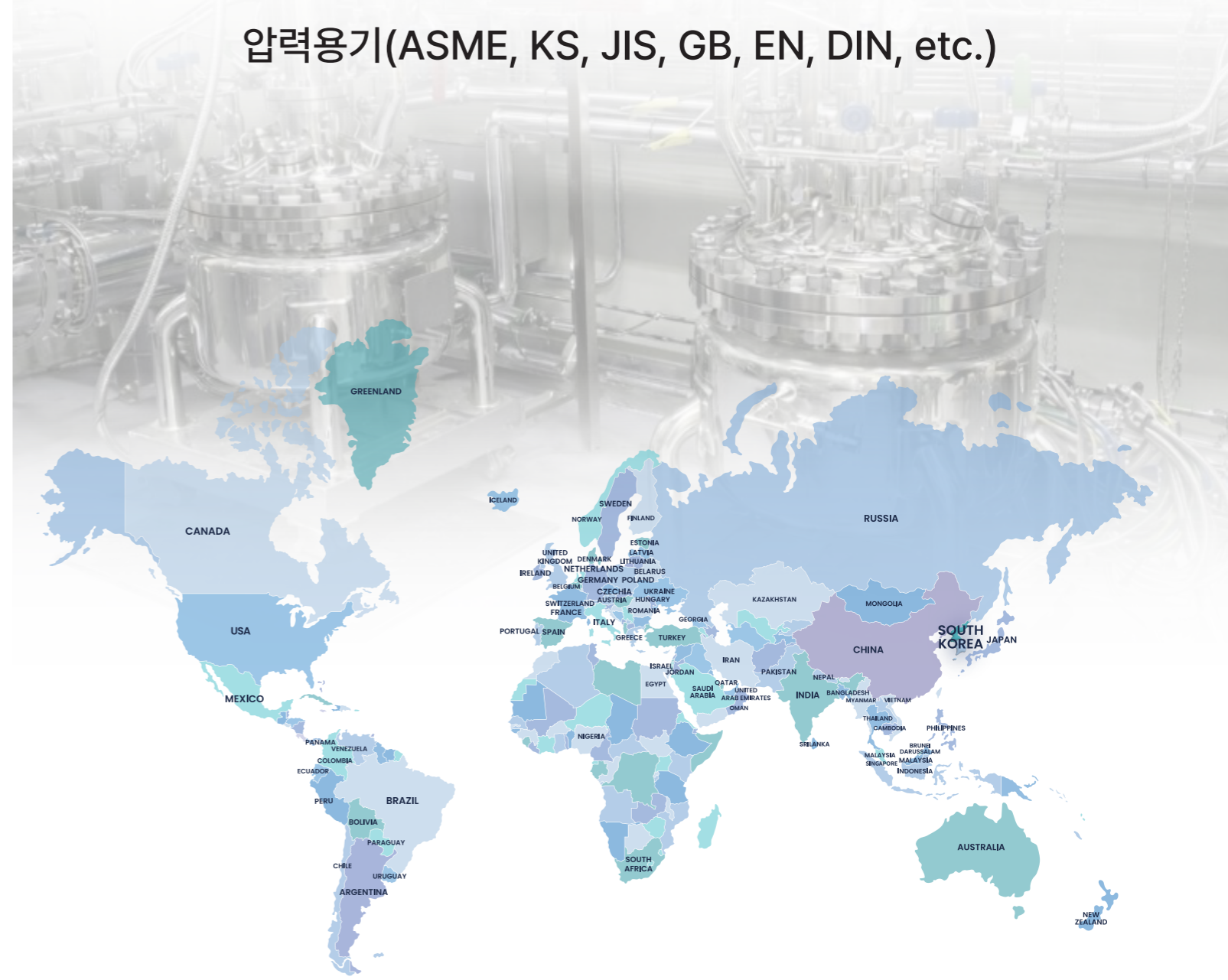


공식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공식 카탈로그

대한민국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수입검사 안내

압력용기(ASME, KS, JIS, GB, EN, DIN, etc.)



 서은플랜트기술(주)
SEOEUN PLANT TECH CO., LTD.

문의전화 010-7760-6176 / 010-5796-2389 대표전화 031-703-0480

이메일 septechn@septechn.co.kr 홈페이지 www.seplant.com 공식블로그 blog.naver.com/septechn 팩스 031-703-0481

에너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수입품 검사 인증대행

01 서은플랜트기술(주) 소개

서은플랜트기술(주)는 KEA, KOSHA, KGS 수입압력용기 인증 대행 업체입니다.
지난 40여년동안 엔지니어링 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수입 기기의 서류, 도면, 검사, 설치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2 서은플랜트기술(주)의 고객

수입 및 수출업체 : 프로젝트 발주처(사용자), 장비공급업체(무역업체), 제조자(해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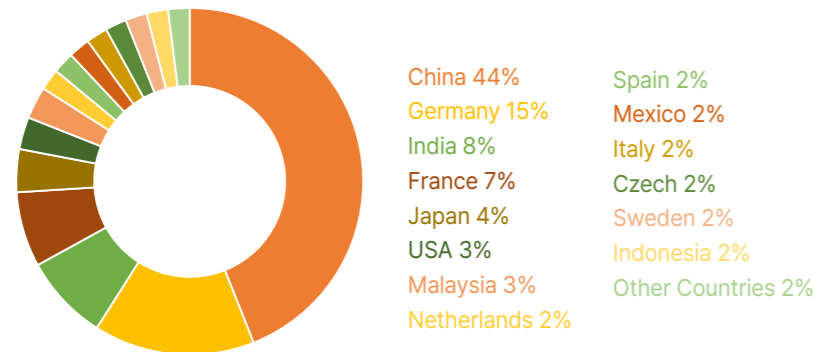
03 서은플랜트기술(주)의 업무범위

- 1) 계약시 필요한 내용 안내
- 2) 제조프로세스에 맞춘 납기 일정 관리
- 3) KEA, KOSHA, KGS 검사관련 사전미팅 실시
- 4) KEA, KOSHA, KGS 요구사항에 따른 도면리뷰 및 다큐먼트 작성
- 5) 서류합격 시 까지 KEA, KOSHA, KGS와의 커뮤니케이션 전담
- 6) 용접검사와 구조검사 현장 출장 검사 동행
- 7) 국내이송 후 설치검사 합격까지 안내

04 서은플랜트기술(주)의 협업의 필요성

- 1) 당사에서는 40여년의 엔지니어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2) 당사에서는 서류, 도면, 검사부터 국내 납기, 설치완료까지의 모든 부분을 고객대신 직접 관리해 드립니다.
 - 3) 당사에서는 제조 및 납기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 예상소요시간 : 서류승인 - 약3주, 검사승인 - 약6주

05 서은플랜트기술(주)의 실적



서은플랜트기술(주)에서는
2017년 12월 3일 수입용기검사 시작이후로
약 69개의 국가에서 2800여대 이상의
압력용기 검사인증 획득 및 진행 중

06 서은플랜트기술(주)의 기타 업무

- 국내인증 및 해외수입인증 - 한국에너지공단(KEA),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가스안전공사(KGS), 선급인증(DNVGL, LR, ABS)
- 기본&상세도면 / 강도계산 / 열계산 / FEA / 공정설계 / P&ID / 내진설계
-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 테스트베드(TEST BED) / 연구목적(LAB BENCH SCALE) / 배관(PIPING)

한국에너지공단 수입 검사 대행 (압력용기)



01 KEA 검사개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2017년 12월 3일 이후에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조업체 현장에서 제조검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EA 수입용기 검사는 다른 나라의 검사와 많이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용 재질에 따라 적용되는 국내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 참조)
또한 해외 제조업체는 국내의 적용기준을 알지 못하므로 인증 및 제작과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은플랜트기술(주)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드리하고자 KEA검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컨설팅 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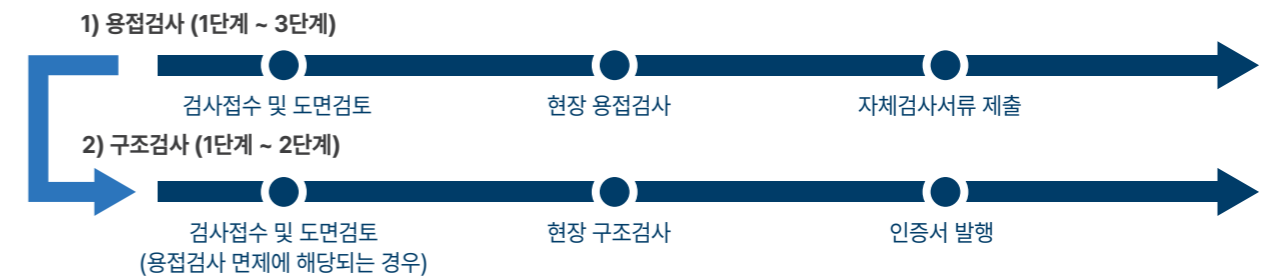
02 KEA 검사대상 및 종류

- 석유화학, 바이오, 제약, 식품, 에너지, 신소재 분야에서 열매체를 이용한 고온, 고압의 압력용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6 참조]
- 검사기기 종류
 - 압력용기(pressure vessel), 열교환기(heat exchanger), 반응기(reactor), 오토클레이브(autoclave), 살균기(sterilizer), 레토르트(retort), 교반기(agitator), 추출기(extractor), 증발기(evaporator), 염색기(dyeing machine), 배양기(incubator),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발효기(fermenter), 글라스라인드용기(glass-lined vessel) 등

03 KEA 검사기준

구분	한국산업표준(KS)	산업통상자원부 고시(MOTIE)
기술기준	KS B 6750 (=ASME Sec.VIII div.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4호
사용가능 재질	KS 또는 ASME 재질만 가능	KS 재질 또는 동등이상 재질 (JIS, EN, GB)
품질관리 체계	문서화된 시스템 요구	요구하지 않음 (단, WPS는 필요)
시편시험	특정한 요건에서만 요구	동체길이 또는 둘레이음 용접부에 대해서 요구
자체검사 인정	비파괴, 기계적 시험 등은 각국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인정받은 업체	

04 KEA 수입용기 검사절차



05 KEA 한국에너지공단

- 설치검사 :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 개방검사 : 최초 설치검사 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 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 계속사용검사 :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제19항]
- 개조검사 : 검사대상기기를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 설치장소 변경검사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려는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